

2024년 필수품목 제도 개선대책 시행에 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설명회

2024년 7월 1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

(2024년 7월 3일 시행)

필수품목 제도 개선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
- 공정위, “계약에 기반한 공정한 필수품목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이 계약에 포섭됨에 따라 이러한 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게 될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

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에 반해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에 근거해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가맹본부가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개정과 더불어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8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비상임직이었던 협의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 서비스의 신속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필수품목 관련 규정이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간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가맹계약서에 개정내용을 반영할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붙임> 가맹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순국 (044-200-4990)
		담당자	사무관	오테관 (044-200-4992)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p> <p>① (생 략)</p> <p>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11. (생 략)</p> <p><u><신 설></u></p> <p>12. (생 략)</p> <p>③ (생 략)</p> <p>법률 제1961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17조(협회의 구성) ① ~ ⑥</p> <p>(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u></p> <p>13. (현행 제12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법률 제1961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17조(협회의 구성) ① ~ ⑥</p> <p>(현행과 같음)</p> <p>⑦ <u>조정원 협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u></p> <p>⑧ <u>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u></p>

<p><신 설></p>	<p>를」 제3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⑨ 조정원 협의회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결합할 수 있다.</p>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61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겸직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61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협의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모두 적용한다.

제4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2. 가이드라인 내용

보도시점 2024. 6. 20.(목) 10:00 / 배포 2024. 6. 20.(목) 8:30

공정위 「구입강제품목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 배포

- 개정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길잡이 역할 기대
- 필수품목과 관련한 10가지 주요 문답으로 구성된 문답집도 함께 배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행('24.7.3.)을 위한 것으로 개정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다가오는 7월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 가맹본부-점주 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이 처음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인 만큼 세부 작성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계약 내용이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관련 ▲계약서 기재내용 ▲계약서 기재방법, ▲계약서 기재예시 및 부적절한 기재 사례를 주된 내용으

로 한다.

① 먼저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필수품목의 종류」에 관해서는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사유, 필수품목의 상세 내역, 거래상대방, 필수품목 종류의 변경 사유와 주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중 필수품목의 상세내역은 정확히 어떠한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하여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고정적인 가격산정방식을 기재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계약서 기재내용이 ①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가격 변경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②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한계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기재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공급가격 결정기준, 공급가격의 변동 사유와 주기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 중 공급가격 결정기준은 필수품목을 직접제조(위탁생산), 재판매, 제3자공급 등 공급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공급가격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변경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공급가격 결정기준 작성예시(일부)>

구분	작성예시
직접제조 (위탁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가격은 직접제조원가(원재료 구매비용 등), 간접제조원가(연구개발비, 인건비, 전기료, 물류비 등), 판관비에 〇〇%~〇〇% 범위의 마진을 더해 결정 ■ 공급가격은 가맹점사업자의 원가율(판매하는 상품 가격 대비 원가의 비율)이 최대 〇〇%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 ■ 공급가격은 직접제조원가(원재료 구매비용 등), 간접제조원가(연구개발비, 인건비, 전기료, 물류비 등)에 가맹본부의 마진을 더해 결정. 단, 공급가격 변경 횟수는 연 〇〇회 이하, 변경 시 인상폭은 기존 공급가격의 〇〇%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
재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가격은 가맹본부의 매입가격에 판관비 및 최대 〇〇% 이내의 마진을 더해 결정

구분	작성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가격은 동일한 제품의 시중 유통가격보다 〇〇%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제3자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가격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율이 최대 〇〇%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가맹본부가 결정하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의 〇〇%를 경제적 이익으로 수취 ■ 공급가격은 가맹본부와 〇〇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유사 제품의 시중 유통가격의 〇〇%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② 다음으로 계약서 기재 방법과 관련해서는 가맹계약서 본문 또는 별지에 작성할 수도 있지만,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바뀔 때마다 가맹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POS를 통해 공지하되 이를 가맹계약에 포섭하게 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은 계약서 기재예시를 제시하는 한편 불분명하고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으로 개정 가맹사업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부적절한 계약서 기재 사례를 제시하였다.

<부적절한 기재사례 예시(일부)>

구분	작성예시
필수품목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구입강제품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특정 카테고리를 포괄적으로 기재한 경우 * 예) 개별 소스 품목 각각이 구입강제품목임에도 ‘소스류’ 등으로 기재 ■ POS나 전자매체를 통해 통지할 때 구입강제품목과 기타 품목이 섞여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무엇이 구입강제품목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경우
공급가격 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결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기재한 경우 * 예) A품목은 가맹본부의 정책적, 경영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공급 가격을 결정 ■ 공급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여 과도한 가격 인상의 한계로 전혀 기능할 수 없는 경우 * 예) C 품목의 공급가격은 가맹점사업자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가맹사업법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약서 기재 방법에 대한 집중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와 함께 가맹본부들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을 계약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와 관련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 상담창구
 • 전화번호: 1855-1490 / 전자우편: support@kofair.or.kr

아울러, 공정위는 그간 추진해 온 필수품목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함께 문답집(「가맹분야 필수품목 바로알기」)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문답집은 ▲가맹분야 필수품목의 개념, ▲필수품목 판단기준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현황, ▲각 개선 방안별 시행 시기 등 가맹분야 이해관계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은 그간 잦은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불합리한 필수품목 거래관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와 같은 변화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별첨 1>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 <별첨 2> 문답집(가맹분야 필수품목 바로알기)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대간 (044-200-4990)
		담당자	사무관	소성훈 (044-200-4992)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가이드라인 내용이 법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I.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7. 3. 시행,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체결되는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구체적인 기재 방식을 규정하고 올바른 계약서 작성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입강제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가맹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구입강제품목의 의미와 계약서 기재 의의

1. 구입강제품목의 의미와 관련 규정

구입강제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품목을 의미한다.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항 제12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구입강제품목이 있을 경우 그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4. 7. 3. 시행)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1. (생략)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생략)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권장하는 구입권장품목과는 구분된다. 다만, 형식상 구입권장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구입대상 품목의 규격, 품질, 용량 등이 엄격히 지정되어 있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는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사실상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강제되는 경우 등에는 구입강제품목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여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 제2호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2호나목에 따른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의 실체적 요건과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2024. 6. 4. 시행령 개정(2024. 12. 5. 시행)으로 구입강제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요건이 절차적 요건에 추가되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현행]

2. 구속조건부 거래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개정 시행령(2024. 12. 5. 시행)]

2. 구속조건부 거래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 (4)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

2.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의의

통상적인 사업 구조 하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 등을 최적의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를 탐색하고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도 거래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특정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면 가맹점사업자는 지정된 거래상대방과 해당 품목의 거래가 강제되고, 그 거래상대방이 제시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구입강제품목의 내역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여건과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거래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대략적인 내용만을 불명확한 표현으로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는 구입강제품목의 구체적 내역이 무엇이며 공급가격은 어떻게 정해지고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이후에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구입강제품목을 추가하거나 공급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거나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정보공개서에는 구입강제품목의 세부내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정보공개서는 구입강제품목의 내역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 또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서로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항상 계약 내용에 포섭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판결 등). 아울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최초 계약 체결시에만 부여하고 있어서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는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점 운영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합리적이고 충분한 숙고를 거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에 반하는 구입강제품목의 변경 또는 공급가격 인상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용이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Ⅲ.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계약서 기재 방식

1.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에 대한 기재 내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품목을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를 계약서에 기재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① 구입강제품목 지정 이유 기재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를 기재할 때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2호나목(거래상대방의 구속)의 내용을 인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떠한 이유로 해당 품목의 거래가 강제되는지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작성 예시]

제○○조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다음 품목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가맹본부(혹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아울러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한 구체적인 사유를 품목별로 작성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② 기준 시점 명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는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최초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를 작성하고, 이후 구입강제품목의 종류가 변동될 경우에는 변동 시점을 명시하여 새로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③ 모든 구입강제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를 계약서에 기재할 때에는 정확히 어떠한 품목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품목인지 알 수 있도록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하여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동일 성격을 가진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용량이나 크기, 포장 등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거래되는 상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 품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 부자재 일지라도 색상별로 구분되어 거래된다면 색상별로 기재해야 한다.

품목의 재고관리를 위해 SKU(Stock Keeping Unit)를 활용하고 있다면 어떠한 품목을 지칭하는지 가맹점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이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거래상대방 명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를 기재할 때에는 품목별 거래상대방도 명시해야 한다. 가맹본부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명’을 기재한다.

이때 다른 사업자의 경우 상호명이 중복되어 거래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소재지나 연락처 등 해당 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구입강제품목 종류의 변경 사유 및 주기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구입강제품목 종류의 변경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과도한 품목 추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계약서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 제품 철수 및 신제품 출시 등 구입강제품목이 변경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구입강제품목을 변경한다면 변경 주기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반기 1회 등)

2. 「구입강제품목 종류」의 기재 방법(양식)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를 가맹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양식과 방법은 가맹계약의 체결방법, 구입강제품목의 수, 기타 가맹본부의 여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양식과 기재방법을 사용하든지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관련하여 기재된 사항이 가맹계약에 포섭된다는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를 기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맹계약서 본문 또는 별지로 포함시키는 방법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를 가맹계약서 본문 또는 가맹계약서의 별지로 포함시킬 수 있다. 가맹계약서의 별지로 기재하는 경우 본문에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별지로 규정한다는 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POS나 전자매체의 공지정보 제공으로 갈음하는 방법

POS에 기재된 상품정보 혹은 가맹점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자매체의 공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입강제품목 종류의 계약서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이러한 방법으로 통지된 사항이 가맹계약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POS 등의 상품정보나 전자매체 공지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서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계약서 제공 시점에 관련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이후 구입강제품목의 종류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 시점별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POS 등의 상품정보나 전자매체 공지정보에 거래되는 품목이 구입강제, 구입권장, 자율 등의 구분이 없이 섞여 있는 경우, 반드시 구입강제품목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서면 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기존 계약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보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변경 이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시점별 정보를 따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다. 기타 방법

가맹본부의 여건, 가맹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기재내용과 기재방법의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3. 「구입강제품목 종류」의 계약서 기재 예시 및 부적절한 기재 사례

가. 계약서 기재 예시

[계약서 별지로 포함하는 경우]

<계약서 본문>

제○○조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품목(이하 구입강제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와 같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구입강제품목은 신제품 출시, 기존 제품 철수 등의 사유로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별지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시 제공해야 한다. 단, 구입강제품목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기에 1회로 한정한다.

[별지 ○] 구입강제품목 내역

2024년 7월 3일 기준

순번	품목	SKU	규격·단위	거래상대방
1	치즈	C0014	박스(2.5kg*4ea)	가맹본부
2	도우	D588	박스(350g*45ea)	가맹본부
3	햄(대)	H1000	밀봉(1kg*2ea)	A식품(주)
4	햄(소)	H0200	밀봉(200g*5ea)	(주)B식품
...

* A식품(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로 2길, 044 - 000 - 0000

* (주)B식품: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로 3길, 044 - 000 - 0001

[POS로 통지하는 경우]

제○○조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러한 품목의 종류(규격 및 단위, 거래상대방, 기준 시점 등을 포함한다)를 POS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통해 통지된 내용은 본 가맹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② 위 제1항에 따른 구입강제품목은 신제품 출시, 기존 제품 철수 등의 사유로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구입강제품목의 내역을 POS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단, 구입강제품목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기에 1회로 한정한다.

③ 가맹본부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내역을 따로 저장·관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부적절한 기재 사례

■ 구입강제품목이 있다는 사실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개별 구입강제품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특정 카테고리를 포괄적으로 기재한 경우

* 예) 개별 소스 품목 각각이 구입강제품목임에도 ‘소스류’ 등으로 기재

■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관련하여 POS로 통지하는 사항이 가맹계약에 포섭된다는 내용 없이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POS를 통해 통지한다’라고만 기재한 경우

■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를 POS로 통지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를 변경하였음에도 새로운 구입강제품목의 내용을 POS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 POS나 전자매체를 통해 통지할 때 구입강제품목과 기타 품목이 섞여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무엇이 구입강제품목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경우

■ POS나 전자매체를 통해 통지함에도 통지한 내역을 가맹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따로 저장·관리하지 않는 경우

IV.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 방식

1. 고려사항 및 기본원칙

상품 등의 공급가격은 핵심적인 거래조건으로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맹거래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고, 이에 공급가격 역시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각각 결정하기 보다는 가맹본부에 의해 통일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한편 가맹본부의 공급가격 결정은 회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원가요소 외에도 회계적 산출이 불가능한 전략요인, 환경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이러한 요인들은 업종이나 품목별로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상황 및 환경 변화에 따라서도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품목별로 고정적인 가격산정방식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기계적으로 공급가격을 정하는 가맹본부는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고정적인 가격산정방식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맹본부는 거래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가맹점사업자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변경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변동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가맹계약서에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해야 한다.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의 기본 원칙>

- ①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가격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가격 변동의 한계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재된 내용이 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계약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기재 내용

가. 기재 내용

앞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변동의 한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해야 한다.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① 구입강제품목별 공급가격 기재

세부 구입강제품목별로 공급가격을 기재한다. 각 구입강제품목을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가격을, 제3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공급가격을 기재한다. 이때 '시가'나 '별도

협약' 등 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가격을 숫자로 기입해야 한다. 또한 기재하는 가격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제외되어 있는 것인지 같이 명시해야 한다.

② 기준 시점 명시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최초 계약체결시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구입강제품목별 공급가격을 기재하고, 이후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변동 시점을 명시하여 구입강제품목별 공급가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결정기준 기재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기재해야 한다. 이를 기재할 때에는, 구입강제품목을 성격이 동일·유사한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카테고리는 직접제조, 위탁생산, 재판매, 제3자 공급 등 공급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개별 가맹사업의 특성에 따라 가격 결정의 특성을 더욱 잘 구분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이를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새로운 카테고리 설정을 사용해 무방하다. 한편, 공급가격 결정기준은 개별 구입강제품목별로 각각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카테고리 내에서 결정기준이 동일·유사한 품목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급방식에 따른 공급가격 결정기준 기재방법>

① 직접(위탁) 제조

직접 제조 또는 위탁 생산하여 공급하는 품목의 경우 원가 및 마진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품목별 제조원가, 간접비 등 비용, 가맹본부의 마진 등 가격 구성요소를 기초로 한 구체적인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확한 원가 및 마진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마진의 범위만을 기재하거나 세부 가격 구성요소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가격구성요소만을 기재하는 경우 기재한 내용이 가격 변동의 한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가격 변동의 폭 등을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격 결정 시 고려하는 전략적 요인으로 가맹본부의 마진율이 아닌 가맹점사업자의 적정 이익 확보를 중요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상품판매가격 대비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원가율)을 기준으로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할 수도 있다.

[작성 예시]

- 공급가격은 직접제조원가(원재료 구매비용 등), 간접제조원가(연구개발비, 인건비, 전기료, 물류비 등), 판관비의 합이고 그 외에 가맹본부의 마진은 미반영
- 공급가격은 직접제조원가(원재료 구매비용 등), 간접제조원가(연구개발비, 인건비, 전기료, 물류비 등), 판관비에 ○○%~○○%범위의 마진을 더해 결정
- 공급가격은 직접제조원가(원재료 구매비용 등), 간접제조원가(연구개발비, 인건비, 전기료, 물류비 등), 판관비에 최대 ○○% 이내의 마진을 더해 결정
- 공급가격은 가맹점사업자의 원가율(판매하는 상품 가격 대비 원가의 비율)이 ○○%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

- 공급가격은 가맹점사업자의 원가율이 최대 〇〇%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
- 공급가격은 직접제조원가(원재료 구매비용 등), 간접제조원가(연구개발비, 인건비, 전기료, 물류비 등)에 가맹본부의 마진을 더해 결정. 단, 공급가격 변경 횟수는 연 〇〇회 이하, 변경 시 인상폭은 기존 공급가격의 〇〇%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
- 공급가격은 직접제조원가(원재료 구매비용 등), 간접제조원가(연구개발비, 인건비, 전기료, 물류비 등), 판관비, 마진의 합으로 직접제조원가의 〇〇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② 재 판매

가맹본부가 기 제조된 상품 등을 구매하여 구매한 상태 그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상표 부착, 소분 등 단순 가공만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재판매 상품의 경우 매입가격 및 마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품목별 매입가격 및 마진 등 가격 구성요소를 기초로 한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진의 범위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재판매 상품의 경우 시중에 동일한 상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제품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기재할 수도 있고, 직접제조 상품과 동일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상품판매가격 대비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원가율)을 기준으로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기재할 수도 있다.

[작성 예시]

- 공급가격은 가맹본부의 매입가격에 판매관리비만 더해 결정
- 공급가격은 가맹본부의 매입가격에 〇〇%의 마진을 더해 결정
- 공급가격은 가맹본부의 매입가격에 판관비 및 〇〇%~〇〇% 범위의 마진을 더해 결정
- 공급가격은 가맹본부의 매입가격에 판관비 및 최대 〇〇% 이내의 마진을 더해 결정
- 공급가격은 동일한 제품의 시중 유통가격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 공급가격은 동일한 제품의 시중 유통가격보다 〇〇%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 공급가격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가격 대비 원가의 비율(원가율)이 〇〇%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
- 공급가격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율이 최대 〇〇%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
- 공급가격은 가맹본부의 매입 가격에 가맹본부가 책정한 마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가격 변경 횟수는 연 〇〇회 이하, 변경 시 인상폭은 기존 공급가격의 〇〇%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
- 〇〇협회가 발표하는 〇〇의 시세에 최대 〇〇%의 마진을 더해 결정

③ 제3자 공급

제3자 공급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제3의 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거래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제3의 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가맹본부가 제3의 사업자에게 운송만을 위탁하고 가맹본부가 거래 주체가 되는 단순 물류 위탁과 구분된다.

제3자 공급 방식에서 공급가격 결정기준은 다양한데, 가맹본부가 제3의 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을 지정하여 주는 경우도 있고, 제3의 사업자와 협의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을 정하거나, 제3의 사업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제3의 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을 지정하여 주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직접(위탁) 제조 또는 재판매 품목에 준하는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제3의 사업자와 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제3의 사업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되, 제3의 사업자와 공급가격 결정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협상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제3자 공급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다면 이에 대한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작성 예시]

- 공급가격은 가맹점사업자의 원가율(판매하는 상품 가격 대비 원가의 비율)이 최대 ○○%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가맹본부가 결정하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의 ○○%를 경제적 이익으로 수취
- 공급가격은 가맹본부와 ○○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가맹본부는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미수취
- 공급가격은 가맹본부와 ○○ 간 협상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유사 제품의 시중 유통가격의 ○○%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 공급가격은 ○○가 결정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의 ○○%를 경제적 이익으로 수취
- 공급가격은 ○○가 결정하되, 가격 변동에 관한 사항은 매년 초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가맹본부는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미수취

④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 변경 사유 및 주기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의 변경 또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변경사유 및 주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가맹본부에 의한 일방적이고 잦은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이 변경될 수 있는 조건(예: 제조원가의 변화, 물류비용 변화, 가맹점사업자 원가율 변화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변동 주기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결정기준의 예외사유 기재

가맹본부는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의 창궐 등 통제불가능한 사유(불가항력)로 인한 수급불안정 및 가격 급등과 같이 공급가격 결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공급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기재 방법(양식)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포함시키는 양식과 방법은 위 'Ⅲ. 2. 구입강제품목 종류의 기재 방법'에서 예시한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가맹본부의 여건, 가맹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재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양식과 방법을 사용하든지 상기 기재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가맹계약에 포섭된다는 내용 또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4.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예시 및 부적절한 기재 사례

가. 계약서 기재 예시

[계약서 별지로 포함하는 경우]

<계약서 본문>

제○○조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① ~ ② (생략)

③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은 [별지 ○]와 같다. 단,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의 창궐 등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전 세계적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변동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별지 ○]의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④ 위 제3항에 따른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은 품목별 원가율 변경, 급격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별지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시 제공해야 한다. 단, 공급가격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기에 1회로 한정한다.

[별지 ○]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

2024년 7월 3일 기준

공급방식	순번	품목	공급가격(부가세 포함)	공급가격 결정기준
직접 제조	1	치킨 매콤 양념	300원(1ea)	직접 제조원가, 간접 제조원가, 판관비의 합계 (마진 없음)
	2	치킨 파우더	5,000원(1box)	직접제조원가, 간접제조원가, 판관비의 합계에 마진 ○○% ~ ○○%를 더함
	3	염지 닭	4,000원(1ea)	직접 제조원가, 간접 제조원가, 판관비에 마진을 더해 결정

				하되, 공급가격 변경은 분기 1회 이하, 변경 시 인상폭은 기존 공급가격의 〇〇% 이내로 함
재판매	4	치킨 상자	5,000원(100ea)	가맹본부 매입가격에 물류비만을 더해 결정
	5	치킨봉투(소)	3,000원(300ea)	가맹본부 매입가격에 〇〇%의 마진을 더해 결정
	6	치즈볼	2,000원(1ea)	동일 제품 시중 유통가격 수준에서 결정
	7	종이호일	8,000원(300ea/1box)	유사 제품 시중 유통가격의 〇〇%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제3자 공급	8	탄산음료	800원(1ea)	A식품(주)이 가격을 결정하며 가맹본부는 리베이트 등을 미수취
	9	치킨무	500원(1ea)	(주)B식품과의 협상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며, 가맹본부는 공급 건당 〇〇원을 리베이트로 수취

* 비용 요인에 대한 설명

- 1) 직접제조원가는 원재료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다.
- 2) 간접제조원가는 연구개발비, 기술료, 인건비, 전기료, 설비·장비의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 3) 판관비에는 보관유지비, 물류비, 기타 관리비, 가맹본부가 지출하는 홍보, 마케팅, 판촉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다.
- 4) 마진은 가맹본부가 가격 변동 가능성, 시장 내 경쟁력, 투자 여력 확보 등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한다.

※ 원가율을 기준으로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기재시 특정 판매상품에 투입되는 구입 강제품목을 모두 묶어서 기재 가능

예) 상기 표에서 양념치킨 제조에 투입되는 품목들을 묶어 '양념 치킨 판매에 따른 원가율이 〇〇%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이라고 기재

[POS로 통지하는 경우]

제 〇〇조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① ~ ② (생략)

③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기준시점을 포함한다)은 POS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통지된 내용은 본 가맹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단,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의 창궐 등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전 세계적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변동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POS로 통지한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④ 위 제3항에 따른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은 품목별 원가율

변경, 급격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있고, 이 때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POS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단, 공급가격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기에 1회로 한정한다.

나. 부적절한 기재 사례

- 구입강제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기재하지 않고 현재 기준 공급가격만을 기재한 경우
-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결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기재한 경우
 - * 예) A품목은 가맹본부의 정책적, 경영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공급가격을 결정
 - * 예) B품목은 제조원가, 판관비, 마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POS 시스템을 통해 통지한다고만 기재하고, 통지된 내역이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강제품목 중 일부에 대한 공급가격 결정기준만을 기재한 경우
- 공급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여 과도한 가격 인상의 한계로 전혀 기능할 수 없는 경우
 - * 예) C 품목의 공급가격은 가맹점사업자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3.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내용 (2024년 12월 5일 시행)

보도시점 2024. 5. 23.(목) 차관회의 통과 후 별도 통지 / 배포 2024. 5. 23.(목)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 -
- 시행령 시행 경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의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함

이에 작년 12월 필수품목의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24.1.2. 공포, '24.7.3. 시행예정)하였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개선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만약,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확대 및 가격인상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 지정, 가격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견표출 기회가 확보되고 가맹본부의 절차 준수가 계약을 통해 보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③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를 신설하였다.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문화가 정착되어 필수품목 외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다만 공정위는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은 가맹본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공정위는 향후 제도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개정안은 등록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하는 내용으로 협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법안에 과도하게 빈번한 협의 요청을 규율할 수단이 없어 가맹 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는 협의의 형식화나 본부-점주 간, 점주단체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지고,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에 도입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도의 시행 경과를 충분히 살펴본 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고시 배포 및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 2>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대간 (044-200-4990)
		담당자	사무관	소성훈 (044-200-499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개정 이유 및 내용****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거래조건 변경 절차 추가 [안 제12조]**

-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아, 가맹점주가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계약을 통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 이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높이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었다.
- 이번 개정안은 필수품목 확대, 단가산정방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한다.
 - 이때 기존 점주의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 기존 계약과 신규·갱신 계약이 차별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나.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제재 근거 마련 [안 [별표2] 제2호 나목]

- 현재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규정으로는 임의로 품목을 변경하거나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할 것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에 추가한다.
 - 현재는 특정 거래상대방을 정하더라도 정보공개서에만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나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 필수품목 항목, 단가산정방식, 품질·수량 등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 수소법원 소송중지 관련 절차 마련 (안 제19조, 제27조)

-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 가맹사업법 제23조의2 >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이에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알리고, 조정절차 종료 시 협의회가 결과를 수소법원에 통지하도록 한다.
 - 한편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등에 따라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경우 협의회가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한다.

2

기대 효과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건전한 협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u>법 제11조제2항제12호</u>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p>1. ~ 6. (생략)</p> <p>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p> <p>8.·9. (생략)</p> <p>제19조(분쟁조정 신청) ① <u>법 제22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신설></p> <p>② <u>제1항</u>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u>각호</u>의 서류를 첨부하</p>	<p>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u>법 제11조제2항제13호</u>-----</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p> <p>----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p> <p>---</p> <p>8.·9. (현행과 같음)</p> <p>제19조(분쟁조정 신청) ① <u>법 제22조제1항</u>에 따라 -----</p> <p>-----</p> <p>----- <u>각 호</u>-----</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번호</p> <p>② <u>제1항</u>에 따른 -----</p> <p>----- <u>각 호</u>-----</p>

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7조(소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 제8조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소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 제8조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 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적용한다. 이 경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그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현행과 같음)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1)·(2) (생략)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 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p> <p><신 설></p>	<p>[별표 2]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현행과 같음)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1)·(2) (현행과 같음) (3) ----- ----- 특정한 거래상 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강 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 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관 한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 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4)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 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 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 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 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p>

4. 필수품목 제도 개선대책 Q&A

가맹분야 필수품목 바로알기

2024. 6.

목 차

1. 필수품목의 개념	1
2. 필수품목의 판단기준	3
3. 필수품목의 문제점	5
4.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	7
5.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8
6. 필수품목 운영 현황의 확인 방법	9
7.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반영일	10
8.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방법	11
9.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시행일	12
10. 필수품목 제도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3

1. 필수품목이 무엇인지 공급합니다. 필수품목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필수품목 개념) 필수품목은 법정 개념은 아니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 경우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하는 품목과 구입을 권장하는 품목 모두를 필수품목으로 칭하기도 하고, 이 경우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 각각 구입강제품목, 구입권장품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필수품목 허용 여부) 이와 같이 필수품목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강제되는데, 가맹사업법은 이와 같은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고,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및 예외요건의 세부내용은 <참고 1>을 확인하십시오.

< 참고 1 >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관련 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현행]

2. 구속조건부 거래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2024. 6. 4. 개정, 2024. 12. 5. 시행]

2. 구속조건부 거래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4)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

2. 어떻게 필수품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있을까요?

□ (판단 기준) 어떠한 품목이 필수품목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품목 판단기준>

어떠한 품목이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 ① 객관적으로 상품·원재료·부재료·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해당품목을 필수품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치킨 가맹브랜드에서의 육계나 소스류, 커피 가맹브랜드에서의 원두나 케익류 등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필수품목의 사례입니다.

□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등에서 필수품목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품목 불인정 사례 >

- 김밥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인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크어 등 일반공산품

-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과 관련이 없고,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더라도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1인의자, 테이블, 빠의자, 금전등록기, 전산장비(PC) 등 설비·장비
- 커피 가맹사업에서 시중구매가 가능하고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거나 거래가 강제되지 않을 시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라탄의자, 라탄소파, 테라스의자, 흡연실 의자 등 가구류·용품
- 치킨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양념 제조비법 등에 해당되지 않고,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시장에 다수 존재하는 해충방제서비스 등 용역
- 치킨 가맹사업에서 가맹사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정해 놓은 품질기준이나 사양이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주문제작한 상품도 아니어서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 김밥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였으나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규격과 재질을 특정하여 요구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보증을 구현할 수 있는 만두찜 종이 등 부자재

※ 필수품목 판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IV. 2.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필수품목은 가맹사업에 꼭 필요한 것 아닌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 (필요성) 가맹사업은 그 특성상 모든 가맹점이 일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수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특히 가맹본부만의 노하우가 담긴 소스와 같이 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한 품목의 경우, 이를 공급받는 것은 가맹점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문제점)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 필수품목의 특성상 가맹점은 지정된 거래상대방에게 지정된 품목의 구매가 강제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일부 가맹본부들은 이를 악용하여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및 가격인상의 구체적인 사례는 <참고 2>를 확인하십시오.

< 참고 2 >

필수품목 관련 가맹점주 피해 사례

구분	사례
과도한 품목지정	<p>▶ 커피 프랜차이즈 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u>공산품</u>(연유, 우유, 생크림 등), <u>주방도구</u>(포장재, 주걱 등)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비싼 가격에 공급 - 시중에서 판매하는 탄산수에 <u>로고만 부착한 후</u> 필수품목으로 지정 - 시중 우유의 <u>일부 성분만 소량 변경하여</u> 필수품목으로 지정
	<p>▶ 피자 프랜차이즈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영업에 필요한 품목 중</u> 오이, 양파를 제외한 <u>모든 품목</u>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p>▶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제품을 데우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u>오븐</u>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 제품을 고가에 공급 - 완제품 병음료 보관 전용 <u>냉장고</u>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고가에 공급하였으나, 냉장 기능이 미흡하여 점주 대부분은 해당 냉장고 대신 주방 냉장고에 병음료를 보관
일방적 가격인상	<p>▶ 한식 프랜차이즈 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품목인 소고기를 기존보다 <u>낮은 품질의 부위로 변경하면서</u> <u>공급가격은 오히려 인상</u> (시중가의 약 2배 가격으로 공급)
	<p>▶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본부가 패티 공급업체로부터 <u>공급받는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u> 가맹점주들에게 <u>공급하는 가격은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u> - 가맹계약서에 원부자재 가격이 정해져 있고 이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점주들과 <u>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함에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u>
	<p>▶ 치킨 프랜차이즈 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동안 약 7회에 걸쳐서 51개 품목의 가격을 대폭 인상
그 외	<p>▶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상추, 양배추, 토마토 등 채소를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만 사용하도록 강제 하면서, 계절상 <u>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때는</u> 시중에서 <u>별도로 구입하도록</u> 지시
	<p>▶ 커피 프랜차이즈 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u>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u>을 공급

4. 필수품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 공정위는 작년 9월 가맹분야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①필수품목 관련 사항의 계약서 필수기재, ②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추진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필수기재)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거래 조건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전 과정에서 점주의 권리·의무를 계약을 통해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필수품목 협의제) 또한 필수품목의 확대, 공급가격 인상 등 필수 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기존에는 제재가 곤란했던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분	과거	개선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미기재	필수품목 목록 및 가격산정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
필수품목 협의의무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고 가격을 인상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제재하여 거래조건 협의 관행 정착

5. 4번과 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가맹점주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아지게 되나요?

- 우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던 관행이 근절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고 거래조건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 가맹점주는 거래조건 변경 시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공급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필수품목을 새로 지정하려면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하므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입니다.
 - 아울러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기재한 공급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가격을 변경해야 하고, 가격 인상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시장의 가격 인상 요인과 무관한 과도한 가격 인상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 가격 인상이 어려워지므로 필수품목 판매마진에 중점을 둔 현재의 가맹사업 모델이 점차 로열티 모델(가맹점 매출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급)로 전환되어 갈 것입니다.
 - 필수품목 판매마진 모델에서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상시 가맹본부의 이윤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주의 수익은 감소하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됩니다.
 - 반면 로열티 모델은 가맹점주의 수익이 증가할수록 가맹본부의 수익도 함께 증가하므로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수익모델입니다.

6. 가맹희망자는 계약을 원하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 현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 전반에 걸친 정보를 담고 있어 가맹계약서와 함께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참고 3 > 표준정보공개서 일부 예시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반포삼겹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구분 ^①	품목 ^②	규격 ^③	거래 형태 ^④	거래 상대방 ^⑤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⑥
부동산	해당없음				X
용역	POS 사용료	시스템 사용료	강제	OO시스템	X
				
설비	냉장고	1,000ℓ	권장	OO전자	X
				
상품	포장삼겹살	500g	권장	당사	O
	특제소스	300ml	강제	(주)한라산	X
				
원·부재료	삼겹살	10kg	강제	당사	O
	오겹살	5kg	강제	당사	O
				
.....					

□ 아울러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법 개정('24.7.3. 시행)으로 앞으로는 가맹계약서에도 필수품목의 내역이 세부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7. 필수품목 제도개선으로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필수품목 관련 사항들이 많이 추가되었는데, 각 사항들을 언제까지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산정방식을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가맹사업법은 2024년 7월 3일 시행 예정이며,
 -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으로 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2024년 12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곧바로 반영해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	구분	반영 시점
필수품목 종류 및 가격산정방식	신규, 갱신계약	2024년 7월 3일부터 반영 (계약체결 시)
	기존 계약서	2025년 1월 2일까지 반영 (모든 계약서)
거래조건 협의절차	신규, 갱신계약	2024년 12월 5일부터 (계약체결 시)
	기존 계약서	2025년 6월 4일까지 반영 (모든 계약서)

8.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 (필수품목 종류) 필수품목의 종류를 계약서에 기재할 때에는 어떤 품목들이 필수품목인지와 함께 필수품목 지정 사유, 거래 상대방, 기준시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어떤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로 종류·유형·규격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재된 필수품목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변경이 예상되는 주기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공급가격 산정방식)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할 때에는 품목별 공급가격, 기준시점, 공급가격 결정기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공급가격 결정기준은 ①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가격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②가맹본부의 일방적 가격 변동의 한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제조, 위탁생산, 재판매 등 공급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급가격과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변경이 예상되는 주기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필수품목의 의미를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 구입강제품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9.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협의를 해야하고 어떻게 협의해야 하나요?

-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2월 5일부터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여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협의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제가 시행되기 전에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여 규정할 예정입니다.
 - 공정위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가맹점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면서도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10. 현재까지의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까지 완료된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점	내용
가맹사업법	'24.1.2. 개정 '24.7.3. 시행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추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24.6.4. 개정 '24.12.5. 시행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추가
구입강제 품목 계약서 기재 사항 가이드라인	'24.6.20. 배포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기재방식에 대한 가이드 제공

□ 앞으로 추진 예정인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점	내용
고시 제정	'24.11. 예정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제정
표준계약서 개정	'24.12. 예정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